『소방안전관리자』 실무(선임자) 교육 안내

(Ver 15.2)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		• 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교육 안내	과정명	소방안전관리자 실무(선임자) 교육
	교육 대상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첨부 1참조), 선+·해임 안내(첨부 2참조) •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자 관련 근거 : 법 제41조제1항1호 및 제2호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교육대상(선임) 여부확인(Click) (협회사이트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주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관련 근거 :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교육 과정	교육과정 / 교육형태 / 교육시간 / 교육 장소 집합과정 / 소집교육 / 소집 4시간 / 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교육 교재 미리 보기(Click)
	교육 흐름도	• 교육안내문 수령 후 협회사이트에서 교육신청하여 교육수강 - 교육안내문 우편발송(시도지부별 일정에 따라 교육일 10일전까지 발송) - 협회사이트에 실무교육신청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일시, 장소 등 신청(사전접수) 과정개설 (시도지부) → 교육안내문 (우편발송) / 교육신청 (협회사이트) → 소집교육 (4시간) → 교육이수 (이수증발급)
	교육 일정	협회사이트 실무교육 일정참고 실무교육 일정보기(Click)

	교육 참가시 구비 서류	• 교육참가원, 신분증, 선임된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협회 자격수첩)
	교육 내용	• 소방관계법규 및 화재사례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 •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훈련 •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대피요령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관련 질의회신 등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실무교육 수수료	• 55,000원 실무교육 수수료 납부 (Click)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협회회원의 경우 실무교육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회원 혜택(Click)
	실무 교육 이수증 발급	• 실무교육이수증은 교육이수 후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 확인 및 이수증 발급 (Click) (협회사이트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미 이수자 행정 처리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 명령 관련 근거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인터넷 실무교육 수수료 결제방법 안내		❖ 신용카드 결제 교육일자 선 택 ➡ 교육신청자 정보확인 ➡ 결제하기 (신용카드) ➡ 교육신청 완 료 ❖ 무통장 계좌 입금 교육일자 선 택 ➡ 교육신청자 정보확인 ➡ 무통장계좌 할 당 ➡ 교육수수료 입 금 ➡ 교육신청 완 료 ※ **주의사항** 1. 실무교육신청 후 익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교육 접수내역이 취소되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2.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3.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4.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fsa.or.kr접속>소방교육>실무교육>나의 교육신청내역) 5.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3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부별 연락처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 정보(Click)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2671-9076~8	**부산지부**(부산 동래구)	051-553-8423~5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569-1971~2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429-6911,7911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257-0131~3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256-9011~2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031-945-3118,4118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055-237-2071~3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7119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942-6679~81
충북지부(청주 흥덕구)	043-237-3119,4119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063-212-8315~6
강원지부(춘천)	033-257-0119 033-251-7119	**제주지부**(제주시)	064-758-8047 064-755-1193

※ 별첨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 및 선임자격

등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	선임 자격
특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1항	1. 소방기술사를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를 가진 사람 3.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1항
1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2항	1. 소방기술사를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를 가진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를 가진 사람 4.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5. 1급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2항
2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 및 1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	1. 소방기술사를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를 가진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를 가진 사람 4.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

	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3항	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7.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8. 1급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9. 2급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3항
공공기관	다음 각 호에 공공기관 (단,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대상인 공공기관 제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가. 소방기술사를 가진 사람 나. 소방시설관리사를 가진 사람 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를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를 가진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를 가진 사람 4.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7.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8. 1급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9. 2급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중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10.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진 사람 ※ 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별첨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제5조제4항]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누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누구에게	관할 소방서장
선임 및 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이내 소방서 신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해당일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신규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대상기준이 된경우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법 제21조(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관련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선임 자격증(국가기술자격 및 협회자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 선임자격 : 별표 1참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누 가	**공공기관 기관장**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 : 별표 1참조
누구에게	관할 소방서장
선임 및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관서 통보(관련 서류 등)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제6조] **※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근거 :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에서 3항
벌칙 조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50조제5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53조제5항,제9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53조제3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소재지 (전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 (전화:)		
		직위	선임일자	
		경력 (총선임기간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는 관리업자의 명칭과 계약기간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공동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소방안전관리대상물명칭	소방안전관리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명칭	소방안전관리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명칭	소방안전관리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공동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2.3>

<table>
<tr><td colspan="6">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td><td>처리기한
3일</td></tr>
<tr><td rowspan="4">소방안전관리
소방대상물</td><td>상호(명칭)</td><td colspan="2"></td><td>용도구분</td><td colspan="2"></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구 조</td><td colspan="5">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td></tr>
<tr><td>사용승인일</td><td>. . .</td><td>선 임 구 분</td><td colspan="3">신축, 증축, 소유권변경,
용도변경, 해임</td></tr>
<tr><td rowspan="6">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
교육 접수
자 또는 소
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응시자
(선임예정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
(이메일 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직 위</td><td colspan="5"></td></tr>
<tr><td>교육접수/
응시접수</td><td colspan="3">. . ./ . . .</td><td>접수번호/
응시번호</td><td>/</td></tr>
<tr><td>강습기간/
자격시험일</td><td colspan="5">. . .~ . . ./</td></tr>
<tr><td colspan="2">그 밖의 필요한 사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td><td>수수료
없 음</td></tr>
<tr><td>구비서류</td><td colspan="6">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